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다20474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5다204747 회사에관한소송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담당변호사 정강찬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황상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56777 판결
판결선고	2025.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확실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

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2010. 1. 6. 자 주주명부에는 O 주식회사(2010. 2. 17.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가 12,000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가 3,000주, J 주식회사(2021. 5. 31.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라 한다)가 3,000주, 원고가 2,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18. 2.경 I가 F, M에게 피고 주식 각 6,000주를, L이 N에게 피고 주식 3,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주권 양도거래사실을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도 2018년경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위와 같은 주식양도사실을 반영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F는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2021. 10.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F가 위 주주총회에 본인 겸 M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C, D, E, F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C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2021. 10. 25. 자 주주명부에는 F, M이 각 6,000주, N이 3,000주, K가 3,000주, 원고가 2,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별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 찬성 여부 등이 “O”, “X”로 표시되어 있으며, C이 피고 대표이사로 기명날인하였다.

마. 원심은, 피고의 2021. 10. 25. 자 주주명부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의 정당한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원고, F, M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한 F 및 M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의 2021. 10. 25. 자 주주명부(을 제1호증)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된 C이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 여부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주총회가 있는 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의 적법한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의 2021. 10. 25. 자 주주명부 작성 전에는 2010. 1. 6. 자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달리 그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는 2010. 1. 6. 자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I, L, K, 원고이다. 설령 피고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0. 1. 6. 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아니한 F, M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F, M에 대한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 ②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I, L, K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지, 이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지, 만일 F 등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F, M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영재(주심) 엄상필